

제헌절 하루 앞둔 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소송 '기각'이 헌법정신" 2만6천 시민 탄원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16 13:05

민주노총-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헌재서 다룰게 아니라, 노동현장서 집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의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열렸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는 일환 중 하나로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막기 위해 7월 17일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2만6003명의 탄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의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열렸다. 최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공장 중대재해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7명, 매년 2,400여명의 산재 사망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는 중에도 지난 4월 1일 중기중앙회 등 305명 사업주는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참담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4월 1일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제기는 지난해 11월 이미 기각된 바 있다(두성산업 제기). 민주노총은 "주지하다시피 중대재해의 80%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형법의 차등 적용을 둔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법 제정 이후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고, 국민의 71%라는 압도적 찬성 속에 2024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의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에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사회가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넘쳐나는 참혹한 현실을 끊어내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법률의 입법목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달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헌법소원 기각 서명에 2만6003명의 노동자 시민이 동참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287)에 대한 탄원인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외 연명인이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죽음의 사업장을 불법파견으로, 위장도급으로, 노동자의 숫자로 펜스를 치고 가리겠다는 요구”라고 규탄했고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아울러 경영자단체는 이 법을 헌법재판소로 갖고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엄정 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 시민의 분노에 찬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 즉각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의 집행기관은 느장 수사,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각과, 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